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7. 14
시민보사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6월 2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7년 6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1997년 7월 8일 제50회(임사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 가.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종전 종량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처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이 50ℓ, 75ℓ, 100ℓ의 3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1일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 등의 불편이 많아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 개정
 - 현 행 : 50ℓ, 75ℓ, 100ℓ (3종류)
 - 개정조례안 :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5종류)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專門委員 : 유재한)

본 조례안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에서 소량의 폐기물을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려고 하나 용량이 적은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규격봉투 50ℓ에 담아 버릴 경우 5~7일의 시일이 요하게 되므로 부패가능 쓰레기를 하절기에 오래토록 방치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1일 배출처리를 위한 10ℓ, 20ℓ의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실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다고 사료 됨.

4.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5
------------	-----

제출년월일 : 1997. 6.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97. 4. 1 시행)으로 종전 종량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처(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하였는 바

-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이 50ℓ, 75ℓ, 100ℓ의 3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1일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 등의 불편이 많아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 요 골 자

- 사업장용 규격봉투의 용량 개정

- 현 행 : 50ℓ, 75ℓ, 100ℓ
- 개정조례안 :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3.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이견없음
- 라.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 별표 2 > 중 사업장용 규격봉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업 장 용	10ℓ			50		210
	20ℓ			100		420
규 격 봉 투	50ℓ			254		1,070
	75ℓ			382		1,600
	100ℓ			507		2,140

제16조제2호 < 별표 3 >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량 (ℓ)	용 도
5	생활폐기물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5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기타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10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규격봉투가격(제1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규격봉투가격(제14조제4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제 작 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구 분	제 작 비	수집·운반수수료	처리비	판매이윤	판매가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생		략)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현	행과	같	음)	
사업장용 규격봉투	50 ℓ	(신	254	설)	1,070	사업장용	10 ℓ		50		210
	75 ℓ		382		1,600	사업장용	20 ℓ		100		420
	100 ℓ		507		2,140	규격봉투	50 ℓ	(현	행과	같	음)
특수규격봉투		(생		략)		특수규격봉투	(현	행과	같	음)	
						규격봉투	75 ℓ	(현	행과	같	음)
						규격봉투	100 ℓ	(현	행과	같	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별표 3>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용량(ℓ)	용 도	용 량(ℓ)	용 도
5	(생 락)	5	(현행과 같음)
1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1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공공용	20	생활폐기물용,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 공공용
30	(생 락)	30	(현행과 같음)
50	(생 락)	50	(현행과 같음)
75	(생 락)	75	(현행과 같음)
100	(생 락)	100	(현행과 같음)